
법학전문도서관 운영세칙

■ 제정 : 2007년 12월 1일

■ 개정 : 2019년 8월 24일

■ 관리부서 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(이하 “법학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,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) 법학도서관은 본 대학교 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분관으로서 도서관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한다.

제3조 (직무) 법학도서관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법학관련 국내외 각종 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며, 그 자료를 본교 구성원과 사회에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제4조 (자료수집과 정리) ① 법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에서 확보하되, 법학도서관에서는 수증이나 별도의 기금 마련을 통하여 장서를 확충하도록 노력한다.

② 자료의 등록 및 정리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이용) 법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세칙으로 정한다.

제6조 (보칙)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8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